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7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출자 : 하남시장

1. 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나. 상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한 세출 조문 정비(안 제3조)
-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환경정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팀장 직위 · 성명	수질총량팀장 김은미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우지윤 (790-511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2. <u>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3. <u>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4. <u>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u> 5. <u>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p><신 설> <신 설></p>	<p>제3조(세출)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u> 2. <u>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u> 3. <u>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u> 4. <u>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u> 5. <u>특별회계로의 전출금</u> 6. <u>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u> 7. <u>「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
<p>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지방재정법」 <u>제9조제3항</u>----- -----.</p>

관계법령 발췌서

1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한강수계법)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 한다. <개정 2010. 5. 31., 2014. 1. 28., 2015. 2. 3., 2016. 1. 27.>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 8. 3.]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2호, 2021. 3. 9., 일부개정]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28., 2014. 5. 9., 2018. 1. 16., 2019. 1. 8., 2020. 7. 21.>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 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 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